

가스 화재사고에 대하여



출처/가스안전 · 발행/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1. 급격한 산소연소에 의한 화재사고

▶ 사고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년 11월 00일(목) 13:40분 경
- 장 소 : 경남 00시 00조선소

▶ 피해현황

- 인명피해: 사망 1명
- 재산피해 : 약 6만원

▶ 시설현황

- 그라인더, 매니폴드

▶ 사고원인

- 제조중인 선박의 진수식을 종료하고 진수식을 위해 철거했던 매니폴드를 재설치하면서 공기와 산소 호스를 오인 연결하였고, 협력업체(태광산업) 직원인 강덕희(남, 52세)가 진수식 후 남은 잔업을 위해 선박내부로 내려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복



속으로 공급되고 있는 산소에 그라인더 불꽃이 튀면 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임.

사례2. 캐비넷히터 체결미숙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6년 12월 ○○일(화) 20:50분 경
- 장 소 : 부산 ○○구 ○○주택

▶ 피해현황

- 인명피해: 없음
- 재산피해: 없음

▶ 시설현황

- 캐비넷히터 × 1개
- 부탄용기(13kg) × 1개

▶ 사고원인

• 상기장소에서 피해자 박성애(41세, 여)씨가 캐비넷히터를 사용 후 히터를 끄기 위해 조정기 밸브를 잠그려는 순간 조정기와 용기의 연결부위에서 가스가 소량 누출되어 원인모를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어 조정기일부와 호스가 불에 그을렸으며, 불을 끄려고 하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와 눈썹이 그을은 사고임.



- 2003년 04 29일(화) 14시00분경
- 서울 송파구 삼전동 2층 주택 반 지하

▶ 피해현황

- 인명피해: 사망2명
- 재산피해: 없음

▶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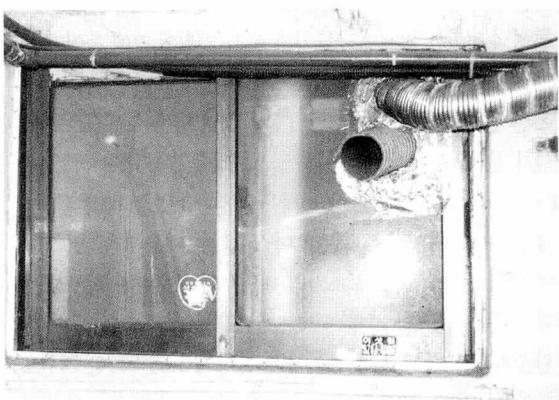
- 사스보일러(FE: 강제 배기식, 93년 9월 제조)

▶ 사고내용

•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U자 모양으로 휘어진 곳에 응축수가 고여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되어 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의 벌어진 틈새에서 실내로 유입되어 거주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 · 사망한 사고임.

▶ 사고내용

- 배기통이U자 모양으로 휘어져 응축수가 고일 수 있는 구조로 가스보일러를 사용
- 환산화물 또는 질산화물에 약한 알루미늄 주름관을 사용
- 배기통을 가스보일러 제조사가 제시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 시공하지 않음, 가스보일러 설치 시 시공표지판 미 부착



사례3.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CO중독사고

▶ 사고일시 및 장소